# 가족친화인증 심사가이드
# (대기업, 공공기관)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가족친화인증 심사가이드

## 목 차

1. 가족친화인증 개요 ---------- 3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 15
3. 현장심사 준비사항 및 운영계획 ---------- 18
4. 법적요구사항 및 작성예시 ---------- 21
5. 신규인증 및 재인증기준 ---------- 28
6. 유효기간 연장 인증 기준 ---------- 29
7.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 30

# 1. 가족친화인증 개요

## □ '가족친화인증'이란?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 연혁

2014. 12월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544개사 선정 (유효기간 연장 86개사, 재인증 14개사 포함)

2014. 12월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총 28점)

2014. 5월 제3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정부포상 (총 15점)

2013. 12월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311개사 선정 (유효기간 연장 23개사, 재인증 9개사 포함)

2013. 12월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총 17점)

2013. 5월 제2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정부포상 (총 10점)

2012. 12월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116개사 선정 (유효기간 연장 15개사 포함)

2012. 12월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총 10점)

2012. 5월 제1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정부포상 (총 10점)

2011. 11월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106개사 선정 (유효기간 연장 11개사 포함)

2011. 11월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총 10점)

2010. 11월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31개사 선정

2009. 11월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20개사 선정

2008. 12월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14개사 선정

2007. 12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인증 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인증 대상** : 기업 및 국가·공공기관

□ **심사 기관** : 한국능률협회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 인증기준

| 구분 | 신규인증/재인증 | 유효기간 연장 인증 |
|---|---|---|
| 중소기업 | 60 | 30 |
| 대기업·공공기관 | 70 | 30 |
| 적용기준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br>-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의 배점 중 50%이상의 점수를 획득 |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30점 이상 획득<br>- '대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 실행제도 배점 중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 |

## □ 인증심사비용

|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 | 비고 |
|---|---|---|---|
| 신규 인증 신청 | 무료 | 1,000,000원 | 부가세 별도 |
| 유효기간 연장 인증 신청 | | 500,000원 | |
| 재인증 신청 | | 1,000,000원 | |

## □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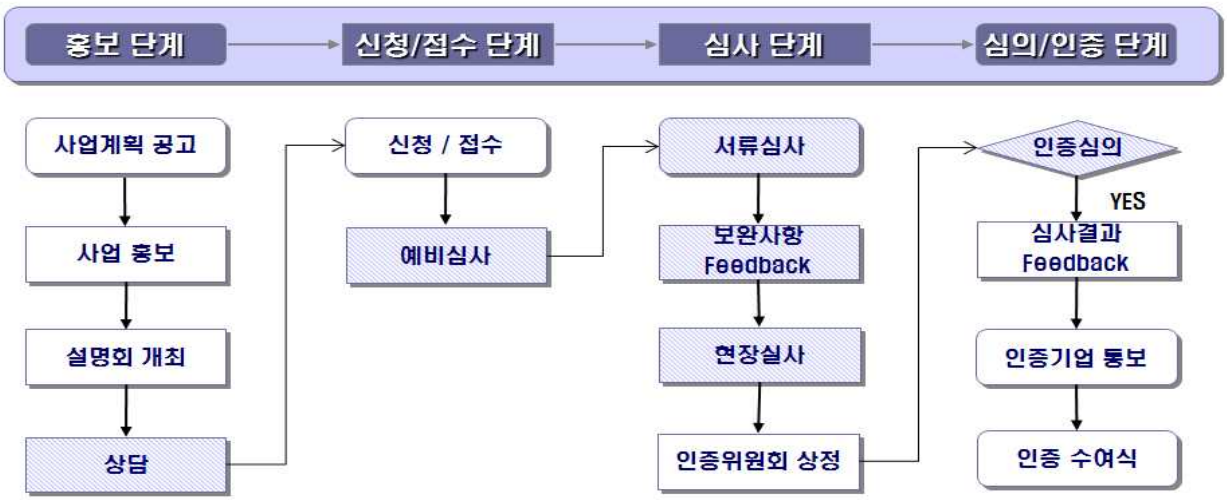


## □ 인증의 유효기간

○ 신규 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 인증(2년) ▸ 재인증(3년)

※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

##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 총 956개사

('14.12월 기준)

| 구분 / 연도 | 계 | 대기업 (23.3%) | 중소기업 (44.8%) | 공공기관 (31.9%) |
|---|---|---|---|---|
| 계 | 956 | 223 | 428 | 305 |
| 2008 | 9 | 3 | 0 | 6 |
| 2009 | 14 | 5 | 3 | 6 |
| 2010 | 23 | 7 | 6 | 10 |
| 2011 | 86 | 24 | 22 | 40 |
| 2012 | 101 | 23 | 29 | 49 |
| 2013 | 279 | 84 | 111 | 84 |
| 2014 | 444 | 77 | 257 | 110 |

## □ 가족친화인증 기업 명단

| 연도 | 구분 | 기업(기관)명 |
|---|---|---|
| '08년 (9개사) | 대기업 (3개사) | 교보생명보험(주), ㈜대웅제약, 유한킴벌리 |
| | 공공기관 (6개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09년 (14개사) | 대기업 (5개사) | 롯데쇼핑㈜, 매일유업(주), 아시아나항공㈜,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
| | 중소기업 (3개사) | 경은산업(주), 주식회사 동화세상에듀코, ㈜삼광 |
| | 공공기관 (6개사) | 기술신용기금,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남부발전(주),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중부발전(주) |
| '10년 (23개사) | 대기업 (7개사) | 경남에너지(주), 삼성카드(주), 엘오케이(유), 우리에프아이에스(주), 한국애보트(주), (주)KT, LG 유플러스 |
| | 중소기업 (6개사) | (주)대건테크, (주)솜피, 신화철강(주), (주)엠아이케이21, 한국아이시스(주), (주)해피브릿지 |
| | 공공기관 (10개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철도공사 |
| '11년 (86개사) | 대기업 (24개사) | ㈜경동도시가스, ㈜골프존, ㈜광주은행, (주)농협물류, 동아오츠카 주식회사, ㈜동화엔텍, 롯데쇼핑㈜롯데시네마,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바텍, 삼성화재해상보험㈜, ㈜세아에삽, (주)세아제강, ㈜엔에스쇼핑, ㈜엔투비, 존슨콘트롤즈오토모티브코리아㈜, 지에스네오텍㈜,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포스코, |

| 연도 | 구분 | 기업(기관)명 |
|---|---|---|
| | | 푸르덴셜생명보험㈜, 한국릴리 유한회사, 한국아이비엠㈜,<br>(재)한국의학연구소, 주식회사 한독, ㈜한솔홈데코 |
| | 중소<br>기업<br>(22개사) | ㈜네이처텍, ㈜디알 액시온,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주)바이저,<br>비아이피 주식회사, 비엔스틸라㈜, 주식회사 비투엔컨설팅,<br>㈜에스엠컬처앤콘텐츠, (주)산호수출포장, 선일금고제작, (주)신라명과,<br>㈜애드맨, ㈜에스에이테크, (주)에스케이이엠, (주)잉카엔트웍스, 호국용사촌<br>㈜ 익산하이테크, 천호식품 주식회사, (주)체리쉬, 태림산업㈜,<br>파나소닉코리아 주식회사, 프렉스에어코리아㈜, 한화제약㈜ |
| | 공공<br>기관<br>(40개사) | 경기도 수원시청, 경기도 안산시청, 경인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남구청,<br>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광역시청, 국가핵융합연구소, 국립암센터,<br>국립재활원, 국방과학연구소,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청,<br>부산교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br>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br>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청,<br>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br>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남도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br>한국마사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br>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br>한국수력원자력㈜,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장학재단,<br>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br>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
| '12년<br>(101개사) | 대기업<br>(23개사) | (주)넥슨네트웍스, 대성산업㈜, 듀폰코리아 주식회사, 롯데쇼핑㈜ 롯데마트,<br>서비스탑(주), 서울도시가스㈜, 스태츠 칩팩코리아, ㈜신세계푸드,<br>(주)씨제이오쇼핑, 아스공항㈜, 에릭슨엘지(주), SK이노베이션(주),<br>에프앤유신용정보㈜, LG Display, 이랜드월드, 코웨이㈜, 포스코에너지,<br>풀무원식품 주식회사, (사)한국선급, 한국 MSD, 한국지엠,<br>한국피앤지판매유한회사, 현대C&R㈜ |
| | 중소기업<br>(29개사) | 경성정공, (주)다린, 동남특수강㈜, (주)동양엔지니어링,<br>동양종합식품주식회사, (주)동화씨엔에프, (주)리한, ㈜미래컴퍼니,<br>(주)박스터, 365병원, 삼정E&W, 삼화유업, 성도정밀, 신대양(주), 주식회사<br>세영기업, (주)애강그린텍, 에스에프하이웰드, (주)에스유, 주식회사 엔에프,<br>(주)엠티에스코리아, (주)원진엠앤티, 위더스케미칼㈜, 주식회사 코스틸,<br>태영엔지니어링, (주)프라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br>한국오츠카제약주식회사, 한백디스템㈜, ㈜한성기어 |
| | 공공기관<br>(49개사) | 경기도 안양시청, 경상남도 양산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br>광주도시철도공사, (재)광주 광주여성재단, 광주광역시 광산구청,<br>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재)국제방송교류재단, 대구광역시<br>달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br>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 중구청, 부산도시공사,<br>부산시설공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br>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br>안양시시설관리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오산시시설관리공단,<br>우체국금융개발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청,<br>인천항만공사, 전라북도 익산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청남도 당진시청, |

| 연도 | 구분 | 기업(기관)명 |
|---|---|---|
| | | 충청남도 천안시청, 한국감정원, ㈜한국거래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방송공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 '13년 (279개사) | 대기업 (84개사) | 교보문고 주식회사, 군인공제회 제일F&C, 금호고속㈜, 대성에너지㈜, 대우건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 동성하이켐㈜, 디아지오코리아, 락앤락, 롯데로지스틱스㈜,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롯데카드㈜, 롯데푸드㈜, 롯데호텔,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벡스코, 부산은행, 비알코리아㈜,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삼성경제연구소,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삼성물산㈜, 삼성비피화학,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서울병원, 삼성석유화학㈜, 삼성선물주식회사,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자산운용㈜,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SDS, 서원유통, 스테코, 신한서브, 신한은행, 아모텍㈜, 애경산업㈜, 에스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 ㈜, 에스케이텔링크주식회사, 에쓰-오일(S-OIL)㈜, 에어부산, 영화금속, 우리은행, 우진산전, 제이앤비컨설팅, 제일기획, 제일모직, 케이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포스코건설,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이트진로㈜, 한국고용정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한국외환은행, 한솔교육, 한컴, 한화, 한화손해사정㈜, 한화엘앤씨㈜, 한화저축은행,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엠 주식회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호텔신라, 홈플러스테스코㈜, 효성ITX㈜, CJ헬로비전, SK텔레콤㈜ |
| | 중소기업 (111개사) | (주)EG, 가람디자인컨설팅, 골프존네트웍스㈜, 광주일곡병원, 구주기술㈜, 그랜드㈜, 금우㈜, 기전사, 기주산업㈜, 녹원,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금돈, ㈜ 아리네트웍스 , 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대신통신기술㈜, 대열보일러, 대원기전㈜, 대평제관, 덕산코트랜, 델리팜상사㈜, 동신유압, 동양아이텍(합), 동양의학표준과학원, 디엔비, 떡파는사람들, 루키스, 마크로밀엠브레인, 명문코리아, 모든테크, 무학, 문화프로덕션도모, 벡톤디킨슨코리아㈜, 범일산업, 부건비엠㈜, 부산의용촌 GNT,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 비더스토리, 비엠디, 비타민하우스㈜, 삼영이앤티, 삼진보안, 상영산업, 새한트라비스엘리베이터, 서울에프엔비㈜, 선재하이테크, 성도테크, 성호특수강, 세계실업, 세계유압, 세양종합식품(유), 세일엠보, 센텍코리아, 솔트룩스, 시스트로닉스, 신진도아스, 아이패밀리 에스씨,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암페놀커머셜인터커넥트코리아㈜,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에스아이엠㈜, 에스엠텍, 에스엠티, 에싸, 에이스텍, 에이텍, 엘에스웨어, 영창기업㈜, 오성기전, 오케이오병원, 우리별, 우행TMS, 원창스틸, 유니젠, 이너트론, 이브자리, 이스트힐, 이지웰페어, 인피닉, 일신전자통신㈜, 제로투세븐, 제일산업㈜, 제천운수㈜, 중외정보기술, 쥬비스, 지인지기교육, 참고을, 창영산업, 창의와탐구, 청해진수산, 케이포엠㈜, 코마스, 킴, |

| 연도 | 구분 | 기업(기관)명 |
|---|---|---|
| | | 트라이언소프트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에프, 티플러스, 포웰, 피티엠에스, 하지공업㈜, 한국애브비, 한국에자이주식회사, 한성기계공업사, 한성아이엘에스㈜, 한일에코산업㈜, 함께일하는세상㈜, 해암테크㈜, 현대호이스트, 현보, 현항공산업㈜, 활기찬 중부관광, BMW 그룹코리아, GB STYLE, GS목재 |
| | 공공기관 (847개사)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군포시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경기도 의왕시청, 경기도 의정부시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상남도 김해시청, 경상북도 구미시청, 경상북도청,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교통안전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국가기상위상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나주병원,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구광역시청,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중구청, 대전광역시청,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도로교통공단, 부산항만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산림청,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메트로,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산업통상진흥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에스에이치공사,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충청남도 논산시청, 충청남도 서산시청, 충청남도 아산시청, 충청남도 청양군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
| '14년 (444개사) | 대기업 (77개사) | ㈜경기화성바이오밸리, ㈜광주신세계, 금호터미널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김해테크노밸리, (주)대구은행, 동두천드림파워㈜, ㈜동성화학, ㈜동원에프앤비,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보령메디앙스㈜, 부일정보링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전자로지텍㈜, 삼익THK(주), 샘표식품(주), ㈜선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신세계, 신세계건설㈜, (주)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엘앤비,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조선호텔, 씨제이대한통운㈜, CJ CGV㈜,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 푸드빌㈜, 씨제이프레시웨이㈜, ㈜에스에이엠티, SK루브리컨츠 주식회사,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에코시스템㈜, 엘에스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 엘에스니꼬 동제련 주식회사, 엘에스메탈 주식회사, 엘에스산전㈜, 엘에스엠트론㈜, ㈜ 엘지생활건강, 엘지이노텍㈜, |

| 연도 | 구분 | 기업(기관)명 |
|---|---|---|
| | | ㈜엠.피.씨, 주식회사 예스코, ㈜웅진씽크빅, ㈜원, 머트리얼즈, ㈜윌앤비전, 주식회사 유세스파트너스, ㈜ 이노션, ㈜ 이마트, ㈜제주항공, ㈜케이티씨에스, 주식회사 킨텍스, ㈜ 파리크라상, ㈜팬택씨앤아이, ㈜포스메이트, (주)포스코피앤에스, 주식회사 포스코휴먼스,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현대건설(주),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현대로템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현대에이치디에스㈜,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케피코, 현대하이스코㈜, ㈜호텔롯데롯데월드 |
| | 중소기업<br>(257개사) | ㈜가엘에스앤에스, 건영포장㈜, ㈜경도, 경성산업, ㈜경우시스테크, 경인산업, 고려화공㈜, 주식회사 그린켐텍, 나노 엘이디㈜, (주)나무컴퍼니, ㈜ 나스콤, 주식회사 날리지큐브, ㈜남부식품, 남영TECH, 남일종합식품산업사, ㈜내자인, ㈜네이처닉, 주식회사 넥소, ㈜ 누비콤 , 주식회사 뉴티스, ㈜다림바이오텍, (주)다이테크, 다인이비인후과병원, 주식회사 다한울축산, 주식회사 대광, 주식회사 대덕테크, 대라식품, 대륙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대성, 주식회사 대성지기, 주식회사 대신산업, 대신정보기술㈜, 대영관리주식회사, 대영이앤비㈜, 대진식품, (주)대한인스트루먼트, ㈜대호아이앤티, ㈜대흥에코, 대흥에코 주식회사, ㈜델타시스템, 농업회사법인㈜돈도담, 동림전기 주식회사, ㈜동성식품, ㈜동일식품, ㈜동진푸드, 동해식품㈜, 디씨에스이엔지 주식회사, (주)디에이케이코리아, ㈜디엔디리미티드, 주식회사 디투에스, ㈜라셀르, 주식회사 랩죤, ㈜ 로이포스,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마이크로인스펙션㈜, 마이크로큐닉스㈜, 만구수산㈜, ㈜매드포스터디, ㈜메디컬그룹베스티안, ㈜메이딧, 주식회사 메이아이, ㈜메타바이오메드 , 모닝하우스, (유)목양, ㈜미애부, ㈜미정, 주식회사 바이로봇, ㈜반도기전, ㈜백산하이텍, 범한산업㈜, 벤텍스㈜, 벨정보㈜, ㈜복천식품, 주식회사 본텍, ㈜봄내, ㈜부산어묵, 주식회사 비디, 주식회사 비비테크, 주식회사 비에스, 주식회사 비티씨, ㈜빗살, 주식회사 산엔지니어링, 삼건세기㈜, 삼성유리공업㈜, 주식회사 삼성종합관리, ㈜삼아씨에프, ㈜삼우아이엠씨, ㈜ 삼육수산, 삼일포장산업㈜, ㈜삼진정밀, 삼흥정공㈜, 상일제과 주식회사, 샬롬산업㈜, ㈜서울식품, ㈜서원푸드, 선일물산㈜, ㈜성광옵틱, 성원물산, 주식회사 세라트, 세미크론㈜, 세원테크 주식회사, 세창인스트루먼트(주), ㈜소만사, ㈜소프트기획, 주식회사 소프트하우스, 시큐어플러스 주식회사, ㈜신성사, 농업회사법인신양종합식품 주식회사, ㈜신영프레시젼, 신일종합시스템㈜, ㈜신화아이티, ㈜신흥농산, 신흥제과, (주)10억홈피, 쏘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에이팜, 씨엘전자 주식회사, ㈜씨엠텍, 주식회사 아누리, 주식회사 아모센스, ㈜아벤트코리아, 주식회사 아산정밀, ㈜아이디어빈스, ㈜아이에스솔루션즈, 아이에이치디벨루인㈜,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알에이, 주식회사 알엠소프트, 앤디피에스 주식회사, 에듀하우스㈜, 주식회사 에브리데이해피, ㈜에스앤비푸드 농업회사법인, ㈜에스에이치페이퍼텍, ㈜에스이이엔지, ㈜에스티아이씨앤디, |

| 연도 | 구분 | 기업(기관)명 |
|---|---|---|
| | | 에이비온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서브, ㈜에이에스티젯텍, 주식회사 에이원, ㈜에프앤디넷, 주식회사 엘씨, 주식회사 엠스텍, ㈜엠쏘텍, 엠엘씨월드카고 주식회사, 엠일레븐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엠케이정공, ㈜여의시스템, ㈜연암테크, ㈜영신특수강, ㈜농업회사법인 예안촌, ㈜옥종합식품, 올제텍 주식회사, ㈜올크린, ㈜올크린, 주식회사 와이에스테크, 주식회사 와이즈웰니스, 주식회사 우리시스템즈, 주식회사 우암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우주식품, ㈜움트리, 주식회사 위치스, 주식회사 위트인포, 주식회사 유넷컨버전스, ㈜유니베라, 주식회사 유런하이테크, 유진농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플러스시스템, ㈜유피앤아이, ㈜유한D&S, 주식회사 이공감, 주식회사 이누크리에이티브앤미디어, 이룸디자인스킨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모티브시앤시, 이샘내과의원, ㈜이에스연구소, ㈜이엔팜, 주식회사 이킴, 이텍산업 주식회사, ㈜인클라우드, ㈜장보고물산, 장암칼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우산업, ㈜제이에스 홀딩스, 제이에스오토모티브㈜,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유)제일물산, 제일E&S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종공, (주)중원냉열, 지성알미늄 주식회사, ㈜지씨에스씨, ㈜지엔팜, 주식회사 지엘앤티, ㈜진성테크, ㈜진테크널러지, 창명제어기술㈜, 창원기술정공, 주식회사 캐스트맨, 컨베스트㈜, ㈜케이아이엔엑스, 케이에스아이㈜, 주식회사 케이피테크, 주식회사 코아옵틱스, ㈜코엔지, 주식회사 크레디프, 주식회사 클콩, 주식회사 킹텍스, ㈜타라그래픽스, 주식회사 타이드, ㈜타이드스퀘어, 주식회사 타파웨어브랜즈코리아, ㈜태광네트웍정보, 태광정밀,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태성전기㈜, (주)토마스 케이블, ㈜토퍼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파나시아, 주식회사 퍼플프렌즈, ㈜포벨, 주식회사 포시에스, 풍원정밀㈜, ㈜프라임솔루션, 주식회사 프로바이오닉, 주식회사 프로토타입, 주식회사 프로휴먼, ㈜플랜아이, 주식회사 피레타, ㈜피엘코스메틱, 주식회사 피케이지, ㈜필라테크, ㈜하몬소프트, 하안유산부인과, 하은테크㈜, 하이로지스㈜, (주)하이코리아, 한국자연환경연구소㈜,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프라켐, 농업회사법인(주)한길웰바이오, 주식회사 한나노텍, 주식회사 한맥식품, 주식회사 한백냉장, ㈜한빛코리아, ㈜한스코리아, ㈜한일코리아, 한황산업㈜, 해동기계공업㈜, 헨켈홈케어코리아 유한회사, 현대산기㈜, 주식회사 현대에스엔씨, ㈜호수의나라 수오미, 주식회사 홍당무, 홍도식품, ㈜화인에프티, ㈜환공식품 |
| | 공공기관<br>(110개사) | 강원도 동해시청, 강원도청,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경기도 고양시청,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구리시청, 경기도 김포시청, 경기도 부천시청, 경기도 성남시청, 경기도 시흥시청, 경기도 파주시청, 경기도 포천시청, 경기도 화성시청,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청, 경상남도청, 경상북도 포항시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동구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부산광역시 남구청, 부산광역시 동구청,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부산광역시 북구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부산광역시 서구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

| 연도 | 구분 | 기업(기관)명 |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br>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단법인<br>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세종특별자치시청,<br>수원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양주시시설관리공단,<br>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br>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br>(재)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br>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br>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br>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청, 전라남도 고흥군청,<br>전라남도 구례군청, 전라남도 목포시청, 전라남도 보성군청,<br>전라남도 순천시청, 전라남도 영암군청, 전라남도 장흥군청,<br>전라남도 함평군청, 전라남도 해남군청, 전라남도청, 전라북도 군산시청,<br>전라북도 김제시청, 전라북도 순창군청, 전라북도청, 전자부품연구원,<br>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제주특별자치도<br>제주시청, 중소기업은행, 창원대학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br>축산물품질평가원, 충청남도 보령시청, 충청북도청, 충청북도 괴산군청,<br>충청북도 단양군청, 충청북도 보은군청, 충청북도 영동군청,<br>충청북도 음성군청, 충청북도 제천시청, 충청북도 증평군청,<br>충청북도 진천군청, 충청북도 청주시청, 충청북도 충주시청,<br>충청지방통계청, 코레일관광개발㈜, 파주시시설관리공단,<br>(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br>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자산관리공사,<br>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br>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br>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

## □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현황

○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출입국 심사 시 전용심사대 이용편의 제공, 은행 투융자 금리우대 등 32개 기관이 106개 인센티브 지원('15.4월 기준)

○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11~), 가족친화경영대상('12~'14)

○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경영사례 홍보(신문광고, 우수사례집 배포 등)

○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인증유효기간 동안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

#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목록 (32개 기관, 106개)

('15. 4월 기준)

| 기관명 | 연번 |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 기업 구분 |
|---|---|---|---|---|
| 고용노동부 | 1 |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우선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융자 우대 | 중소 |
| | 2 | ■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대상 선정 | 최대 2천만원 지원 (고용증가사업장은 1천만원 추가 지원) | 중소 |
| | 3 |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심사 | 가점 5점 이내 부여 | 대·중소 |
| | 4 |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가점 5점 부여 | 대·중소 |
| | 5 | ■ 고용창출지원사업 | 가점 5점 부여 | 대·중소 |
| | 6 | ■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 | 심사협상 시 우대 | 대·중소 |
| 국방부 | 7 | ■ 물품구매 적격심사 |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0.4점) | 대·중소 |
| 금융감독원 | 8 | ■ 기업공시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정보 자율공시 | 인증 명칭, 인증기관, 인증일자, 유효기간 등 명시 | 대·중소 |
| 금융위원회 | 9 | ■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 시 우대 | 사회기여도 평가 반영 | 중소 |
| | 10 |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 우대 | 보증료 0.1% 감면 | 중소 |
| | 11 | ■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항목에 가족친화인증정보 포함 | 인증 명칭, 인증기관, 인증일자, 유효기간 등 명시 | 대·중소 |
| 미래창조과학부 | 12 | ■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가점 1점 부여 | 중소 |
| | 13 | ■ 산업융합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가점 1점 부여 | 대·중소 |
| | 14 | ■ 정보통신응용기술 개발지원사업 | 가점 1점 부여 | 중소 |
| 방위사업청 | 15 | ■ 물품 적격심사 |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0.1점) | 중소 |
| | 16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0.1점) | 중소 |
| 법무부 | 17 | ■ 출입국심사 시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편의 제공 | 출입국카드발급(기업당 1명) | 대·중소 |
| 병무청 | 18 | ■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시 우대 | 중소 |
| 산업통상자원부 | 19 | ■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 가점 2점 부여 | 대·중소 |
| | 20 | ■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가점 2점 부여 | 대·중소 |
| | 21 | ■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 가점 3점 부여 | 중소 |
| | 22 |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R&D) | 가점 2점 부여 | 중소 |
| | 23 | ■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 가점 2점 부여 | 중소 |
| 신용보증기금 | 24 | ■ 중소기업 보증심사 시 보증한도 우대 | 30억원까지 보증한도 우대 | 중소 |
| | 25 | ■ 중소기업 보증심사 시 심사 우대 | 매출액 사정 시 추정매출액 적극 적용, 자기자본한도 적용배제, 시설자금보증취급 시 해지 특약완화, 한도거래 우선운용 등 심사완화 | 중소 |
| 조달청 | 26 | ■ 물품구매 적격심사 |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1점) | 대·중소 |
| 중소기업청 | 27 | ■ 해외진출민간거점활용지원사업 | 가점 3점 부여 | 중소 |
| | 28 | ■ 절충교역 참여 희망 시 가점 부여 | 가점 3점 부여 | 중소 |
| | 29 | ■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가점 부여 | 신인도항목 가점 0.7점 부여 | 중소 |
| | 30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융자한도 우대 | 신성장기반자금 융자잔액 (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및 매출액 한도(150%) 예외 적용 | 중소 |
| | 31 |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가점 2점 부여 | 중소 |
| | 32 | ■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심사 시 우대 | 중소 |
| | 33 |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연구 | 중소 |

| 기관명 | 연번 |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 기업 구분 |
|---|---|---|---|---|
| | | | 장비 공동활용 시 지원 | |
| | 34 | ■ 수출역량강화사업 | 가점 2점 부여 | 중소 |
| | 35 |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가점 2점 부여 | 중소 |
| | 36 | ■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 가점 1점 부여 | 중소 |
| | 37 | ■ 신성장기반자금 | 가점 1점 부여 | 중소 |
| | 38 | ■ 개발기술사업화 | 선정 평가시 '일가정양립 지표' 반영 | 중소 |
| 강원도 | 39 | ■ 해외마케팅 지원 | 사업 신청 시 우대 | 중소 |
| | 40 | ■ 강원도 판로지원 시책사업 | 사업 지원 시 우선지원 | 중소 |
| | 41 | ■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 이차보전율(3%), 최대4년 지원 | 중소 |
| 경기도 | 42 | ■ 해외전시회 단체관 및 통상촉진단 | 가점 4점 부여 | 중소 |
| | 43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시 가점 | 가점 5점 부여 | 중소 |
| | 44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3년 유예 | 중소 |
| | 45 | ■ G-패밀리클러스터 단위사업 지원 | 가점 5점 부여 | 중소 |
| | 46 | ■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 | 최대 5점 부여 | 중소 |
| | 47 | ■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 선정 | 가점 2점 부여 | 중소 |
| | 48 | ■ 기술닥터사업(중기애로기술지원) 진단 | 가점 5점 부여 | 중소 |
| | 49 | ■ 웹메일호스팅 서비스사업 | 1년 무상지원 | 중소 |
| | 50 | ■ 신기술신제품전시관운영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가점 2점 부여 | 중소 |
| | 51 | ■ 경기TP단지 입주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가점 5점 부여 | 중소 |
| | 52 | ■ 기술경영 최고위과정 신청 | 무심사 합격 | 중소 |
| | 53 | ■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육성사업 | 가점 5점 부여 | 중소 |
| | 54 | ■ 전략산업·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 가점 3점 부여 | 중소 |
| | 55 |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금리 0.5% 우대 | 중소 |
| | 56 |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가점 5점 부여 | 중소 |
| | 57 |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 시 가점 부여 | 가점 1점 부여 | 중소 |
| | 58 |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요율 인하 | 0.2% 인하 | 중소 |
| | 59 | ■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 입회비 면제 | 입회비 200,000원 면제 | 중소 |
| | 60 | ■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 '으뜸이마크' 신청비 면제 및 연간사용료 할인 | 신청비 100,000원 면제 연간사용료 할인 (1개 상품10%, 2개 상품 20% 할인) | 중소 |
| | 61 | ■ 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 최고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할인 | 연회비 10% 할인 | 중소 |
| | 62 | ■ 한국무역협회경기지부 무역기금융자사업 가점 | 가점 5점 부여 | 중소 |
| | 63 | ■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통상촉진단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 | 가점 5~10점 부여 | 중소 |
| 경상남도 | 64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3년유예 | 중소 |
| | 65 | ■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 최종 산정된 보증료율에서 0.3% 감면 | 중소 |
| 경상북도 | 66 | ■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 시 우대 평가 | 일반심사 시 도청추천 우대 | 중소 |
| | 67 |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사업 | 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중소 |
| 광주 광역시 | 68 | ■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취업지원사업 | 사업 신청 시 우선지원 | 중소 |
| | 69 |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지원사업 | 사업 신청 시 우선지원 | 중소 |
| 대구 광역시 | 70 | ■ 해외마케팅사업 참가기업 선정 우대 |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회 파견 참가업체 선정 시 우대 | 중소 |
| | 71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우대지원(우선추천) | 중소 |
| 대전 광역시 | 72 | ■ 국내 전시.박람회 대상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가점 2점 부여 | 중소 |
| | 73 | ■ 충청권 벤처프라자 참가 지원 | 우선 선정지원 | 중소 |
| | 74 | ■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참가 시 우대 | 가점 2점 부여 | 중소 |

| 기관명 | 연번 |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 기업 구분 |
|---|---|---|---|---|
| 부산 광역시 | 75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3년 유예 | 중소 |
| | 76 | ■ 고용우수기업 선정 | 가점 10점 부여 | 대·중소 |
| | 77 | ■ 청년인턴사업 | 청년인턴 채용한도 30% | 중소 |
| | 78 | ■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 | 가점 5~10점 부여 | 중소 |
| | 79 | ■ 중소기업 자금 이차보전 지원 | 가점 5점 부여 | 중소 |
| 서울 특별시 | 80 | ■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 자금규모(20억원), 금리는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 2.0~3.0%, 5억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중소 |
| 울산 광역시 | 81 |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 이자차액 보전 | 중소 |
| | 82 | ■ 울산광역시 포상 지원 | 포상 시 우대 | 대·중소 |
| 인천 광역시 | 83 | ■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가점 3점 범위 내 | 중소 |
| 전라남도 | 84 | ■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가점 2점 범위 내 | 중소 |
| | 85 | ■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 인턴지원 인원 1명 추가 | 중소 |
| | 86 |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 3년 유예 | 중소 |
| 전라북도 | 87 |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박람회 참가, 해외통상 촉진) | 가점 부여(최대 1점) | 중소 |
| | 88 | ■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시 가점 부여 | 가점 2점 범위 내 | 중소 |
| 제주특별 자치도 | 89 | ■ 해외마케팅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 가점 3점 부여 | 중소 |
| | 90 | ■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 최종 선정된 보증 요율에서 0.3% 감면 | 중소 |
| 충청남도 | 91 |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 0.2% 할인 | 중소 |
| | 92 | ■ 국외 마케팅 우대 지원 | 참여 우선권 부여 | 중소 |
| | 93 | ■ 국내 마케팅 우대 지원 | 참여 우선권 부여 | 중소 |
| 충청북도 | 94 | ■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 최종 산정된 보증요율에서 0.2% 감면 | 중소 |
| | 95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 0.5% 우대 | 중소 |
| | 96 | ■ 청년일자리지원사업(고용지원금 지원) | 청년일자리지원사업신청자격에 가족친화인증기업 포함 | 중소 |
| | 97 | ■ 고용우수기업 선정 | 가점 2점 부여 | 중소 |
| | 98 | ■ 지역전략사업 진흥사업 신청 시 우대 | 우선 선정 | 중소 |
| | 99 | ■ TP단지 입주선정 평가 시 가점부여 | 가점 5점 부여 | 중소 |
| | 100 | ■ 한국표준협회충북지부 입회비 면제 | 입회비 200,000원 면제 | 중소 |
| | 101 | ■ 한국표준협회 충북지부 '으뜸이 마크' 신청비 면제 및 연간사용료 할인 | 신청비 100,000원 면제 | 중소 |
| | | | 연간사용료 할인(1개 상품 10%, 2개 상품 20% 할인) | 중소 |
| | 102 | ■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 | 가점 10점 부여 | 중소 |
| KB 국민은행 | 103 | ■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융자 금리 우대 | 최고 1.5% 대출금리 우대<br>경영·회계 등 종합컨설팅 무료 제공<br>통합자금관리시스템 서버 무상 제공 | 중소·중견 |
| IBK 기업은행 | 104 | ■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융자 금리 우대 | 1%의 대출금리 추가감면 등 대출조건 우대 (500억원의 특별여신 한도 배정)<br>경영·세무 등 종합컨설팅 무료 지원 | 중소·중견 |
| 신한은행 | 105 | ■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금리 우대 | 최고 1% 대출금리 우대(산출금리 기준)<br>외환, 금융 등 컨설팅 무료 제공 | 중소·중견 |
| 우리은행 | 106 | ■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융자 금리 우대 | 최고 1% 금리 우대<br>재무·리스크관리 등 종합컨설팅 무료지원<br>임직원 및 한부모·조손가족 임직원 금리우대 | 중소·중견 |

#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 공지사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가족친화인증신청서**

| 처리기간 |
|---|
| 4개월 |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재인증

| | | | | |
|---|---|---|---|---|
| ① 기 업 명 (기 관 명) | ※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② 대 표 자 | 한글<br>한자 | | ④ 업 종 | |
| | | | ⑤ 규 모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
| ⑥ 주소 및 담당부서 | 본 사 | (☎ - ) | | |
| | 사업장 | (☎ - ) |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직책 | 성명 |
| | | 전화 | 팩스 | |
| | | 전자우편 | 핸드폰 | |

| ⑦ 현 황 | 자본금 (억 원) | 종업원 수 (명) | | 주력분야 | ⑧ 매출현황(최근 3년간) | |
|---|---|---|---|---|---|---|
| | | 정규직 | 계약직 | | 연도 | 매출액(억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각종 수상 및 인증획득 현황 | 수상 및 인증획득명 | 수상 및 인증 일자 |
|---|---|---|
|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4. 가족친화인증서(유효기간 연장 인증 및 재인증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기업명(기관명) ② 대표자
: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기업명(기관명)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입(인증서에 사용됨)

④업종 :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종류를 기입

⑤규모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그 외 모든 기업은 대기업에 체크

⑥주소 및 담당부서 :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인증서에 사용됨)
※ 업무 연락은 담당부서의 e-mail을 주로 이용하므로 e-mail 및 연락처정보(지역번호를 포함한 회사 전화와 핸드폰 번호 기재)를 정확하게 기재

⑦현황 : 자본금은 신청일 기준 최근 회계 연도 말 기준, 종업원 수는 2014년 12월 31 일 기준 근로자 수

⑧매출현황 : 최근 3년간 매출현황 (2014년, 2013년, 2012년)

⑨수상 및 인증획득명 :
가족친화관련 수상 및 인증
수상 및 인증일자 :
가족친화관련 수상일자 및 인증일자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 기재와 직인 필히 포함
※ 구비서류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및 구비서류 작성 가이드

**1) 신청기간 :** 신규 인증 [공고 시작일 ~ 7. 31.(금)]
재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공고 시작일 ~ 6. 30.(화)]

**2)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3)_회사명/PDF파일(직인포함)

○ 사업자등록증_회사명/PDF파일 또는 JPG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별첨4)_회사명/한글파일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_회사명/한글파일

- 신규/재인증 : 대기업·공공기관(별첨6)_회사명/한글파일
- 유효기간 연장 인증 : 대기업·공공기관(별첨8)_회사명/한글파일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 (별첨9)_회사명/한글파일

**3)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 가족친화사업안내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4) 심사비 납부 :** 신청서에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접수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메일 발송 예정(전자세금계산서 수신 확인후 1개월 이내 입금)

- 심사비 납부 문의 : 최삼열 연구원, 02-6309-9043, csy310@kmar.co.kr)

※ 심사비용

|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 비고 |
|---|---|---|---|
| 신규 인증 신청 | 무료 | 1,000,000원 | 부가세 별도 |
| 유효기간 연장 인증 신청 | | 500,000원 | |
| 재인증 신청 | | 1,000,000원 | |

**5)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전화 : 02-6309-9042~3, 9046~8

## 6) 가족친화경영운영체계 개요

| 페이지 | 내용 | 작성방법 |
|---|---|---|
| 표지 | 1.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 해당 내용에 ■ 표시 (예. ■대기업) |
| | 2. 신청회사명 | 사업자등록증상 해당기업명 기재 |
| 2p | 1. 페이지 상단 머리말 | 사업자등록증상 해당기업명 기재 |
| | 2. 기업(기관)명 | 사업자등록증상 해당기업명 기재 |
| | 3. 기업(기관)유형 | 민간기업인 경우 기업 규모 및 업종 체크<br>공공기관인 경우 유형 체크 |
| | 4. 인력현황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br>비율은 총 종업원수 대비로 산정<br>예: 기혼자비율 = 기혼자/총 종업원 수<br>관리자(과장급) = 관리자(과장급 이상)/총 종업원 수 |
| 4p | 1. 조직비전 | 전사차원의 미션/비전/핵심가치체계를 기재 |
| 5p | 1. 전사조직도 | 가족친화담당부서의 위치가 보이도록 기재 |
| 6p | 1. 제정취지 | 프로그램 도입목적을 기재 |
| | 2. 이용현황 |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 |
| | 3. 소요예산 | 해당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연간 소요된 직접비 |
| | 4. 주요내용(특징) | 프로그램 이용대상, 이용방법, 이용자 만족도 등 |
| | 추가기술 | 개수에 상관없이 페이지를 복사하여 활용하고, 텍스트로만 기술하며, 사진자료 등은 별첨서식에 기재 |
| 7~9p | 1. 법적요구사항 | '운영하고 있습니까?' / '준수하고 있습니까?' 는 시행여부에 따라 기재하시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는 문서화 되어 있는 경우만 ■예로 기재 |
| | 2. 문서명 | 관련제도가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명 및 조항까지 기재 |
| | 3. 내용 | 해당조항의 내용을 기재 또는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시행되고 있는 경우, 보장내용 및 1건 이상 이용 실적 기재 |

## 7)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결과

○ 사업공고 별첨서식 중 신규/재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및 대기업·공공기관 구분에 따라 서식선택
※ 신규/재인증(별첨6), 유효기간 연장 인증(별첨8)
○ 본 심사가이드 [7.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 작성 완료 후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별첨9)에 증빙 작성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조사방법
- 인증사무국 > 인증담당자에게 설문URL발송 > 전직원에게 설문 URL발송 > 직원 응답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해당없음(N/A) 환산법

| 심사항목 | 해당없음(N/A) 처리 기준 |
|---|---|
|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없는 경우 (단 타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이미 이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산정) |
|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 2012~2014년 남성 및 여성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
|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 2012~2013년 2년간 육아휴직 이용자가 없는 경우 |
| 2.1.4 출산전후휴가 후 복귀율 | 2013~2014년 2년간 출산전·후휴가 이용자가 없는 경우 |
| 2.1.5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 | 2014년 배우자출산이 없는 경우 |

- **{ 가족친화실행제도 득점 / (가족친화실행제도 배점-N/A항목배점) } × 60**

# 3. 현장심사 준비사항 및 운영계획

## □ 현장심사 사전준비사항

○ 현장심사 일정협의 : 최고경영자 인터뷰가 가능한 날로 심사팀장과 일정협의

○ 현장심사 시 준비서류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가족친화인증 운영별첨서식, 심사항목별 증빙자료_2부

○ 심사항목별 증빙자료 준비

-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리스트
- 2014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자 리스트
- 2006년 1월 1일 이후 여성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리스트
- 2012년 1월 1일 이후 남성육아휴직 이용자 리스트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전후 휴가 이용자 리스트
- 2014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출산 남성근로자수 및 3일 이상 이용자 리스트
- 법적요구사항이 규정화되어 있는 문서
- 유연근무제 시행근거(시행되는 경우에 한 함)
- 인터뷰대상자 20인 이상 선정(이중 10명 1:1 인터뷰 진행)
  (남성관리자 1명, 여성관리자 1명, 기혼여성 2명, 미혼여성 2명, 기혼남성 2명, 미혼남성 2명)

※ 인사자료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모든 증빙자료는 산출근거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해야 함(각종 신청서 등).

※ 심사팀의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나이, 개인휴대 전화번호 외에는 제공되지 않음.

## □ 심사항목별 증빙확인

| 구분 | 증빙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
| 법적요구사항[최소충족요건] | 운영체계개요, 사규, 내규 | ○ | ○ |
| 1.1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인터뷰 | | ○ |
| 1.2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 별첨서식1. 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참여실적 및 증빙 원본(현장심사) | ○ | ○ |
| 1.3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 담당자 직무기술서 | | ○ |
|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 -2014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자 리스트<br>-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리스트<br>-2006년 1월 1일 이후 여성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리스트<br>-2012년 1월 1일 이후 남성육아휴직 이용자 리스트<br>-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전·후 휴가 및 3일 이상 이용자 리스트<br>-2014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출산 남성근로수 및 3일 이상 이용자 리스트<br>-별첨서식7.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자 리스트(서류심사)<br>-실적증빙 : 내부휴직신청 및 관련 승인서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출산전·후 휴가 신청서, 배추자출산휴가 신청서류 | | ○ |
|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 | | ○ |
|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 | | ○ |
| 2.1.4 출산전·후 휴가 후 복귀율 | | | ○ |
| 2.1.5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 | | | ○ |
| 2.2 유연근무제 | 별첨서식2. 유연근무제 이용자 리스트 | ○ | ○ |
| 2.3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시행) | 온라인 공지, 직원 인터뷰 등 | | ○ |
| 3.1 직원 만족도 | 온라인 설문, 현장 인터뷰 | | ○ |
| 직장어린이집 설치<br>(※의무이행사업장 제외) | 별첨서식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 현장 투어 | ○ | ○ |
|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br>(5가지, 각 1점) | 별첨서식5.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현황1<br>별첨서식6.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현황2 | ○ | ○ |
| 가족돌봄휴직 이용 | 별첨서식8.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리스트 | ○ | ○ |
| 고용노동부 주관<br>「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 별첨서식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실적 | ○ | |
| 고용노동부 주관<br>「고용창출 우수기업」선정 | 별첨서식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실적 | ○ | |
|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 가족친화인증 사무국에서 확인 | | |
|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 별첨서식10. 자동육아휴직제 이용자 리스트 | ○ | ○ |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 별첨서식11.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용자 리스트 | ○ | ○ |
| 대체인력 채용 | 별첨서식12. 대체인력 채용자 리스트 | ○ | ○ |

## □ 현장심사 운영계획(안)

| 시간 | 구분 | 진행 | 내용 | 비고 |
|---|---|---|---|---|
| 09:20~09:30 | 심사팀회의 | | ■ 심사팀도착 및 심사팀회의 | |
| 9:30~10:00 | 시작회의 | 심사팀장 | ■ 심사팀 소개<br>■ 수심팀 소개(기업)<br>■ 인증심사기관 소개<br>■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요 소개<br>- 인증기준, 심사방법, 주요일정, 협조요청사항, 보안서약 등<br>■ 기업 현황 소개 | ▪ 시작회의전 사전일정 협의<br>▪ 심사팀 및 수심팀 전체 참석 |
| 10:00~10:30 | 인터뷰 | 심사팀 | ■ 최고경영자 인터뷰 진행 | |
| 10:30~12:00 | 현장투어 | 심사팀 | ■ 사업장내 현장투어<br>(직장어린이집, 휴게시설, 모유수유실,편의시설 등) | |
| 12:00~13:00 | 중식 | | | ▪ 도시락제공 또는 구내 식당 이용 |
| 13:00~13:30 | 본심사 | 심사팀 | ■ 팀장 :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 데이터검증<br>■ 팀원 : 가족친화경영만족도_직원인터뷰 | |
| 13:30~16:30 | 본심사 | 심사팀<br>개별진행 | ■ 팀장 :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 데이터검증<br>■ 팀원 : 가족친화경영만족도_직원인터뷰 | |
| 16:30~16:50 | 심사팀회의 | 심사팀 | ■ 심사결과정리 | |
| 16:50~17:00 | 종료회의 | 심사팀 | ■ 심사결과피드백 및 질의응답 | ▪ 주무부서참석 |

※ 현장심사 운영계획은 심사팀과 수검팀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

※ 중식은 수검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나, 사내식당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함.

※ 심사팀과의 저녁식사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현장심사 완료 후 심사팀에게 일체의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음.

※ 현장심사시 제공되는 근거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인증추천이 불가함.

# 4. 법적요구사항 및 작성예시

## □ 법적 요구사항(최소 충족요건)

| 법적 요구사항 | 관련 제도가 있을 경우 문서명과 관련 내용 기재 |
|---|---|
| 1.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2.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제한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3. 보건휴가(또는 생리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4. 임산부 근로보호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5.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6.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7. 유급 수유시간 보장이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8.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9.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10.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11. 육아휴직제도 보장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13. 직장 보육시설은 운영하고 있습니까?<br>□ 예 (2015년 1월 28일 이후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계약 체결 시 인정)<br>※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br>□ 아니오(의무이행 가입장이나 미설치)<br>□ 해당없음(의무이행 미대상 사업장)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14.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br>□ 예 □ 아니오 | 1-1. 문서명 :<br>1-2. 내용 : |

## <법적요구사항 실적 작성예시>

| 법적 요구사항 | 관련 제도가 있을 경우<br>문서명과 관련 내용 기재 |
|---|---|
| 1.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br><br>☑ 예<br>☐ 아니오 | 1-1. 문서명 : 취업규칙 제5장 근로조건_제1절 근로조건_제30조(근로시간) |
| | 1-2. 내용 :<br>제3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2.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까?<br><br>☑ 예<br>☐ 아니오 | 1-1. 문서명 : 취업규칙 제5장 근로조건_제1절 근로조건_제41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
| | 1-2. 내용 :<br>제41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br>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br>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br>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br>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 <법적요구사항 근거 법률 및 관련내용>

| 세부항목 | 근거법 | 관련내용 |
|---|---|---|
| 1. 주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 근로기준법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br>- 처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 18세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야간, 휴일 근로제한 | 근로기준법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과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br>- 처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 보건휴가 (또는 생리휴가) | 근로기준법 |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무급)<br>- 처벌규정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4. 임산부 근로보호 | 근로기준법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시행 2014.07.01.<br>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시행 2014.07.01.<br>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br>[근로기준법 시행령]<br>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6.21><br>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6.21><br>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br>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br>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br>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br>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

| | | |
|---|---|---|
| | | 90일까지<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시행 2014.07.01.<br>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br>- 처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5.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br>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br>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br>※시행일<br>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4.9.25.부터 시행<br>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6.3.25.부터 시행<br>- 처벌규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6.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보장 | 근로기준법 |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별표1>에 의한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기준<br>1. 임산부<br>가. 임신 7개월까지 : 2개월마다 1회<br>나.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 : 1개월마다 1회<br>다. 임신 10개월 이후 : 2주마다 1회 |
| 7. 유급 수유시간 보장 | 근로기준법 |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br>- 처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8. 직장내성희롱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br>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남녀고평법 시행령] |

| | | |
|---|---|---|
| | |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br>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br>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br>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br>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br>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br>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br>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br>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br>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br>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
| 10.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br>- 처벌규정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11. 육아휴직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br>시행 2014.1.14<br>-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교대로 사용 가능<br>- 처벌규정 : 육아휴직 미부여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 등 불리한 처우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br><br>[육아휴직 급여제도 활용]<br>고용보험 제70조(육아휴직급여)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피보험대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됨.<br>*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 |

| | | |
|---|---|---|
| |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 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채용된 사람 1인당 월60만원(대규모기업인 경우 월30만원)을 지원 |
|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br>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br>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br>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 13. 직장 보육시설 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이하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br>- 설치의무 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br>〔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4.5.20><br>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br><br>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br>제7조(위탁보육)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5.1.28><br>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5.1.28><br>[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5.1.28]<br><br>※ 2015년부터 보육수당 대체 폐지 |

| | | |
|---|---|---|
| 14. 가족돌봄 휴직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br>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br>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br>⑥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5. 신규인증 및 재인증 기준

○ 인증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가점포함) 이상, 가족친화실행제도 50% 이상 획득 시 인증

| 심사요소 | | 심사항목 | 배점 |
|---|---|---|---|
| 1.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 | | 1.1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15 |
| | | 1.2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 3 |
| | | 1.3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 2 |
| 2. 가족친화 실행제도 (60) | 2.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40) |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 10 |
| | |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 5 |
| | |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 10 |
| | | 2.1.4 출산전·후 휴가 후 복귀율 | 10 |
| | | 2.1.5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 | 5 |
| | 2.2 유연근무제도 (10) | 2.2.1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 10 |
| | 2.3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0) | 2.3.1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시행) | 5 |
| | | 2.3.2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5 |
| 3.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 | | 3.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20 |
| 가.감점 (최대 10) | |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 5 |
| | |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5가지, 각 1점) | 5 |
| | | 가족돌봄휴직 이용 | 2 |
| | |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 1 |
| | |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창출 우수기업」선정 | 0.5 |
| | |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 -1 |
| | |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 1 |
| |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 0.5 |
| | | 대체인력 채용 | 1 |
| **총계** | | | **100 (가감점제외)** |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6. 유효기간연장 인증 기준

○ 인증기준 : 가족친화 실행제도 배점 중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 시 인증

| 심사요소 | | 심사항목 | 배점 |
|---|---|---|---|
| 2. 가족친화 실행제도 (60) | 2.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40) |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 10 |
| | |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 5 |
| | |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 10 |
| | | 2.1.4 출산전·후 휴가 후 복귀율 | 10 |
| | | 2.1.5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 | 5 |
| | 2.2 유연근무제도 (10) | 2.2.1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 10 |
| | 2.3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0) | 2.3.1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시행) | 5 |
| | | 2.3.2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5 |
| **총계** | | | **60** |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 후 60점 만점으로 환산

# 7.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 1.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 평가항목 | 배점 |
|---|---|
| 1.1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15 |

○ 평가기준(최고경영층의 인터뷰 평가 8점)

| 평가척도 | | 평가내용 |
|---|---|---|
| 1 | 매우미흡(0점) | 부서장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중 1가지 이상 미흡 |
| 2 | 미흡(2점) | 부서장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모두 보통 |
| 3 | 보통(4점) | 경영층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모두 보통 또는<br>부서장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중 1가지 우수 및 1가지 보통 |
| 4 | 우수(6점) | 경영층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중 1가지 우수, 1가지 보통 또는<br>부서장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모두 우수 |
| 5 | 매우우수(8점) | 경영층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모두 우수 |

* 최고경영자 인터뷰 시 확인사항
(1)인터뷰 시 경영층(가족친화 담당부서 임원 이상) 및 부서장(가족친화 담당부서장) 참석여부
(2)성과에 대한 확신 (3)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 평가기준(근로자의 최고경영층 온라인・인터뷰 평가 7점)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조사와 동시진행
※ 온라인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제3의 전문조사기관에서 진행
- 기업별 URL제공 → 회사에서 직원에게 설문 참여 안내

| | |
|---|---|
| 1.2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 3 |

○ 가족친화관련 인정프로그램 : 가족초청행사, 가족캠프, 자녀영어캠프, 가족친화직장교육 등 근로자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 가족친화직장교육 :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친화문화 관리자 교육, 신입사원 OT(가족친화 프로그램 소개), 사내 가족친화 프로그램

○ 평가기준

| 평가척도 | | 평가내용 | 증빙첨부 |
|---|---|---|---|
| 1 | 1점 | 1회 참여 | 별첨서식1. 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참여실적 |
| 2 | 2점 | 2회 참여 | |
| 3 | 3점 | 3회 이상 참여 | |

※ 대표자 참석사진이 없는 경우, 현장심사 시 기업에서 별도 증빙

| | |
|---|---|
| 1.3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 2 |

○ 가족친화 관련 인력의 정의 : 가족친화프로그램 기획, 관리, 교육, 예산의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인력
※ 겸임자 : 가족친화 업무와 다른 업무 겸임 / 전담자 : 가족친화 업무만 전담

○ 평가기준

| 평가척도 | | 평가내용 | 증빙첨부 |
|---|---|---|---|
| 1 | 1점 | 겸임자 보유 | ✓ **현장심사시 확인**<br>- 담당자 직무기술서 |
| 2 | 2점 | 전담자 보유 | |

# 2. 가족친화실행제도

## 2.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평가항목 | 배점 |
|---|---|
|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 10 |

○ 이용률의 정의 : $\frac{\text{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text{대상년도 기준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 \times 100$

※ 2015년의 경우 대상연도 : 2014년 12월 31일 기준

○ 평가기준

| 평가척도 | | 평가내용 | 증빙첨부 |
|---|---|---|---|
| 1 | 0점 | 이용률 10%미만 | ✓ **현장심사시 확인**<br>-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 2 | 2점 | 10%이상~20%미만 | |
| 3 | 4점 | 20%이상~30%미만 | |
| 4 | 6점 | 30%이상~40%미만 | |
| 5 | 8점 | 40%이상~50%미만 | |
| 6 | 10점 | 이용률 50% 이상 | |

※ 증빙 : 내부휴직신청 및 관련승인서류,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 | |
|---|---|
|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 5 |

○ 이용률의 정의 : $\frac{\text{최근3년간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근로자 수}}{\text{최근3년간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녀근로자 수}} \times 100$

※ 육아휴직이용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임

○ 평가기준

| 평가척도 | | 평가내용 | 증빙첨부 |
|---|---|---|---|
| 1 | 0점 | 이용률 2% 미만 | ✓ **현장심사시 확인**<br>-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 2 | 1점 | 2%이상~4% 미만 | |
| 3 | 2점 | 4%이상~6% 미만 | |
| 4 | 3점 | 6%이상~8% 미만 | |
| 5 | 4점 | 8%이상~10% 미만 | |
| 6 | 5점 | 이용률 10% 이상 | |

※ 증빙 : 내부휴직신청 및 관련승인서류,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 2.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계속>

###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 10

○ 복귀율의 정의 : $\frac{\text{2013년 ~ 2014년 남 • 여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text{2013년 ~ 2014년 남 • 여 육아휴직 종료자}} \times 100$

○ 평가기준

| 평가척도 | | 평가내용 | 증빙첨부 |
|---|---|---|---|
| 1 | 0점 | 복귀율 30%미만 | √ **현장심사시 확인**<br>-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 2 | 2점 | 30%이상~40%미만 | |
| 3 | 4점 | 40%이상~50%미만 | |
| 4 | 6점 | 50%이상~60%미만 | |
| 5 | 8점 | 60%이상~70%미만 | |
| 6 | 10점 | 복귀율 70%이상 | |

※ 증빙 : 내부휴직신청 및 관련승인서류,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 2.1.4 출산전·후 휴가 후 복귀율 — 10

○ 복귀율의 정의 : $\frac{\text{2013년 ~ 2014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text{2013년 ~ 2014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 \times 100$

○ 평가기준

| 평가척도 | | 평가내용 | 증빙첨부 |
|---|---|---|---|
| 1 | 0점 | 복귀율 30%미만 | √ **현장심사시 확인**<br>-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 2 | 2점 | 30%이상~40%미만 | |
| 3 | 4점 | 40%이상~50%미만 | |
| 4 | 6점 | 50%이상~60%미만 | |
| 5 | 8점 | 60%이상~70%미만 | |
| 6 | 10점 | 복귀율 70%이상 | |

※ 증빙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재직증명서

### 2.1.5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 — 5

○ 이용률의 정의 : $\frac{\text{2014년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한 남성근로자수}}{\text{2014년 배우자출산 남성근로자수}} \times 100$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는 시작일 기준

○ 평가기준

| 평가척도 | | 평가내용 | 증빙첨부 |
|---|---|---|---|
| 1 | 0점 | 이용률 10%미만 | √ **현장심사시 확인**<br>-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 2 | 1점 | 10%이상~30%미만 | |
| 3 | 2점 | 30%이상~50%미만 | |
| 4 | 3점 | 50%이상~70%미만 | |
| 5 | 4점 | 70%이상~90%미만 | |
| 6 | 5점 | 이용률 90%이상 | |

※ 증빙 :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서류

## 2.2 유연근무제도

| 평가항목 | 배점 |
|---|---|
| 2.2.1 유연근무제도 | 10 |

○ 유연근무제도 종류 및 정의
- 탄력적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으로 법정근로시간내로 맞추는 제도(1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 시차출퇴근제 : 출퇴근시간대에 시차를 두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1일 8시간 근로시간준수)
- 재택근무제 :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직장이 아닌 재택에서 근무가 가능한 제도
- 시간제근무제(단시간근로제)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로하는 제도
- 스마트워크 : 자택 인근 스마트오피스로 출근하여 근무가 가능하거나 주로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원격근무 등이 가능한 제도

※ 프로그램별 최근 3년 이내 1명이라도 이용자가 있는 경우 시행으로 인정

○ 평가기준

| 평가척도 | | 평가내용 | 증빙첨부 |
|---|---|---|---|
| 1 | 0점 | 제도보유 없음 | ✓ **현장심사시 확인**<br>- 유연근무제 시행근거 및 신청서류<br>별첨서식2. 유연근무제 이용자 리스트 |
| 2 | 2점 | 제도보유 1가지 | |
| 3 | 4점 | 제도보유 2가지 이상 | |
| 4 | 6점 | 1가지 시행 | |
| 5 | 8점 | 2가지 시행 | |
| 6 | 10점 | 3가지 이상 시행 | |

## 2.3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평가항목 | 배점 |
|---|---|
| 2.3.1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시행) | 5 |

○ 정시퇴근제도(가족사랑의 날)의 정의 : 일과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에서 특정한 날을 선정하고, 전사 차원에서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하는 제도

○ 평가기준

| 평가척도 | | 평가내용(2014년) | 증빙첨부 |
|---|---|---|---|
| 1 | 0점 | 미시행 | ✓ **현장심사시 확인**<br>**- 직원 현장인터뷰**<br>**- 온라인공지 등** |
| 2 | 3점 | 월1회 이상 시행(월1회~3회) | |
| 3 | 5점 | 주1회 이상 시행(월4회 이상) | |

| 2.3.2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5 |
|---|---|

○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정의 :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마인드 형성 및 인식제고를 위해 자사가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는 프로그램

※ 인정 프로그램 :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친화문화 관리자 교육, 사내 가족친화 프로그램

○ 평가기준

| 평가척도 | | 평가내용(2014년) | 증빙첨부 |
|---|---|---|---|
| 1 | 0점 | 미시행 | 별첨서식3. 가족친화직장교육 실행실적 |
| 2 | 3점 | 연 1회 시행 | |
| 3 | 5점 | 연 2회 이상 시행 | |

##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 평가항목 | 배점 |
|---|---|
| **3.1 직원의 전반적 만족도** | 20 |

○ 설문조사 항목

-가족친화문화 :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문화 조성수준, 배우자출산휴가 이용문화 조성수준 등
-유연근무제 : 시행제도 및 이용에 대한 용이성
-정시퇴근제 : 시행수준 및 정착도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제도 안내
-최고경영층의 의지 및 노력
-중간관리자 인식수준

○ 평가기준

| 조사방법 | | 배점 | 득점 | 조사대상 |
|---|---|---|---|---|
| 1 | 온라인<br>설문조사 | 10점 | 온라인설문<br>조사결과(%) ÷ 10 | √ 전체직원(임원제외)<br>1. 총 근로자 60명 이하 : 최소 총 근로자 50% 이상<br>2. 총 근로자 61명 이상 : 최소 30명 이상<br>3. 총 근로자 301명 이상 : 총 근로자 10% 이상 |
| 2 | 현장<br>인터뷰조사 | 10점 | 현장인터뷰<br>조사결과(%) ÷ 10 | √ 무작위 샘플링 총 10명(담당자 제외)<br>※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일 경우 최소 인원 5명 이상<br>1. 관리자 : 2명(여성1명, 남성1명)<br>2. 여성근로자 : 4명(기혼여성 2명, 미혼여성 1명)<br>3. 남성근로자 : 4명(기혼남성 2명, 미혼남성 1명) |

※ 온라인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제3의 전문조사기관에서 진행
- 기업별 URL제공 → 회사에서 직원에게 설문참여 안내

## ※ 가족친화인증 가.감점(최대10점)

| 평가항목 | 배점 |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사업장 제외)**<br>※ 의무이행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5 |
| ○ 평가기준 : 2014. 12. 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설치의무 사업장 제외)<br>※ 설치 인정유형 : 단독, 공동, 위탁 모두 인정<br>○ 증빙 : 별첨서식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br>✓ **현장심사시 확인** : 어린이집 인가증, 공동·위탁 계약서, 현장 시설 확인 | |
|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최대 5가지, 각 1점)** | 5 |
| ○ 가족친화 관련 인정 프로그램 종류 및 정의<br>① 가족 초청행사 : 가족을 동반한 행사(신입직원 가족초청행사, 가족 기념일 축하, 부모회사체험하기 등)<br>②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야외캠프(자녀영어캠프, 문화체험 등)<br>③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 배우자 타 지역 전근 시 인근 지사로 인사이동지원<br>④ 근로자 상담제도 : 근로자 및 가족의 생애주기별 상담지원<br>⑤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 산전 후 임산부를 위한 시설지원<br>⑥ 임산부 지원프로그램 : 임산부를 위한 교육 및 육아용품 지원<br>⑦ 자녀학자금지원 : 자녀 학자금을 일부 혹은 전부 지원<br>⑧ 가족건강검진지원 : 가족을 위한 건강검진을 연중에 지원<br>⑨ 장기근속휴가지원 : 근속기간 5년 이상의 근속자들을 위한 휴가 지원<br>⑩ 가족휴양시설 제공 : 리조트, 콘도 등의 휴가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br>○ 평가기준 : 최근 3년간(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실행한 프로그램, 각 1점<br>○ 증빙 : 별첨서식5.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현황1<br>별첨서식6.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현황2<br>✓ **현장심사시 확인** : 가족친화프로그램 증빙서류 확인 | |
| **가족돌봄휴직 이용** | 2 |
| ○ 가족돌봄휴직 :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br>○ 가족돌봄휴직 인정 기준 : 연간 최장 90일, 분할 사용 시 1회 30일 이상<br>○ 평가기준 : 최근 3년간(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이용실적 1명 이상 5점<br>○ 증빙 : 별첨서식8.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리스트<br>✓ **현장심사시 확인 :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확인** | |

## ※ 가족친화인증 가.감점 (최대10점) <계속>

| 평가항목 | 배점 |
|---|---|
|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 1 |
| ○ 평가기준 : 2012년 ~ 2014년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1점**<br>○ 증빙 : 별첨서식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실적 | |
|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 0.5 |
| ○ 평가기준 : 2014년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0.5점**<br>○ 증빙 : 별첨서식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실적 | |
|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 -1 |
| ○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여상관리자의 고용기준 미달 -1점 (최근 1년)<br>○ 대상 사업장 :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br>○ 증빙 : 적극적 고용개선 홈페이지(http://www.aa-net.or.kr)->남녀근로자 현황 -> 공문보기<br>→ 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고용노동부로 일괄 조사 의뢰하여 결과 반영<br>→ 이의가 있는 경우 전년도 분석결과 공문 확인 후 제출 | |
| **자동육아휴직제 시행**<br>※자동육아휴직제 :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제도 | 1 |
| ○ 평가기준 : 최근 3년 간(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자동육아휴직제 실행」 시 가점 1점**<br>○ 증빙 : 별첨서식10. 자동육아휴직제 이용자 리스트<br>✓ **현장심사시 확인** : 사내 내부규정 증빙 및 자동육아휴직제 이용자 리스트 | |

## ※ 가족친화인증 가.감점

| 평가항목 | 배점 |
|---|---|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br>※ 시간선택제 일자리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 제도<br>※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 가점 인정 | 0.5 |
| ○ 평가기준 : 최근 3년 간(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대상기업」선정 시 가점 0.5점**<br>○ 증빙 : 별첨서식11.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용자 리스트 첨부<br>✓ **현장심사시 확인** : 해당자의 지원금 수령 통장 증빙<br>(예.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경우,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 |
| **대체인력 채용**<br>※ 대체인력 채용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br>※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체인력 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 가점 | 1 |
| ○ 평가기준 : 최근 3년 간(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여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가점 1점**<br>○ 증빙 : 별첨서식12. 대체인력 채용자 리스트 첨부<br>✓ **현장심사시 확인** : 해당자의 채용확인서 혹은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수령 통장 증빙 | |